

2025 Cosmetic Industry Special Report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PPWR)

심층 분석 보고서

Aug 2025



PPWR 입법 배경

1

EU 그린딜 (Green Deal)

- 패키징 전체 라이프사이클에서 환경 영향 최소화
- 2030년까지 모든 패키징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제화 추진

2

EU 순환경제 행동 계획 (CEAP,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 패키징 포함 주요 분야별 EU 순환경제 이행 로드맵 제시 (2020년 3월 채택)
- 모든 패키징의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보장, 불필요한 포장 퇴출, 재생원료 사용 확대, 표준화된 라벨링, 법적 요건 강화

3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 2022년 초안 공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 패키징 전 생애주기에 걸쳐 작동하는 통합 규제 플랫폼으로 기능

국제사회 원칙 및 EU 상위 정책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단계적·구체적으로 발전

PPWR 정책 방향

PPWD에서 PPWR로 보완된 사항

*PPWD인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Directive(지침)에서 PPWR인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규정)으로 대체됨.

기존 PPWD의 한계



회원국별 분리된
규제 시스템



일괄적 환경 영향
부담 원칙



재활용 위주 규제

PPWR 규제 개선방향

시장 간 조화

인증, 라벨링, 회수 시스템
일원화 통해 공급망 전반의
대응 효율성과 행정 일관성 확보

차등 기여금

패키징 설계, 재질,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기여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 기여금 부과

순환성

EU 순환경제 전략의 이행 위해
'감축 → 재사용 → 재활용'의
자원순환 법적 우선순위 명시

PPWR 정책적 기대효과



국가 간 규제 차이로
발생하는 행정 비용 및
규제 부담 감소



이차 원료 시장 확대 및
기술 혁신 유도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친환경 패키징 설계 통한
고품질 재활용 확대&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PPWR 법적 우선순위(Waste Hierarchy)

PPWR Recital 15 : Reduce → Reuse → Recycle 의무인 3R
폐기물 감축이 최우선, 그 다음이 재사용, 마지막으로 재활용임을 강조

적용 원칙	1. 감축(Reduce)	2. 재사용(Reuse)	3. 재활용(Recycle)
금지 항목	- 과잉 포장 또는 특정 포장 형식 제한 미준수 ✓패키징의 무게 및 부피 기준 ✓빈 공간 비율 제한 ✓두 겹 구조(double walls) ✓불필요한 바닥 구조(false bottoms) 등	- 재사용 인프라 및 패키징 요건 미충족 ✓재사용 시스템 요건 불이행 ✓리필 스테이션 요건 미준수 ✓리필 정보 요건 불이행 ✓리필·재사용 제공 의무 불이행	- 재활용 등급 및 회수 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요건 미준수 ✓재활용 함량 요건 미준수
근거 조항	제10조, 제24조, 부속서 IV	제11조, 제26조-제29조, 제32조-제33조, 부속서 VI	제6조, 제7조 및 부속서 II



각 단계별 '금지 항목' 미준수 시 벌금 및 시장 출시 제한 등 조치 (제62조, 제68조)

접촉 민감 패키징

접촉 민감 패키징과 일반 패키징

접촉 민감 패키징	모든 유형의 패키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PPWR에서, 화장품 등 인체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접촉 민감 패키징(Contact-sensitive packaging)’으로 분류되어 별도 규정 제시 → 내용물 변질 등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법률에 따른 예외 조항 적용
일반 패키징과 차이점 (별도 규제 적용)	● 일반 패키징 대비 완화된 PCR 함량 기준, 사용 제한 및 금지 규정 제공 ● 일반 패키징 대비 엄격한 공급사 정보 제공, 인체 영향 평가 및 모니터링 필요 ● 예외 및 면제 규정 2032년 마련 예정

일반 패키징 대비 완화된 규제

- 위생·안전·품질 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
-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은 비교적 완화된 규제 적용

Point

일반 패키징 대비 강화된 규제

- 인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해물질 제한, 정보 제공, 안전성 테스트, 라벨링 등에서 일반 패키징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규제가 적용

Point

PPWR이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PPWR 조항

화장품 패키징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감축

- 제10조 (포장 최소화)
- 제24조 (과대포장 관련 의무)
- 제25조 (특정 패키징 형식 사용에 대한 제한)

- ① 패키징 최소화
- ② 패키징 공간비율 합리화
- ③ 리필 용기로 전환

재사용

- 제11조 (재사용 가능 패키징)
- 제26조 (재사용 가능 패키징에 관한 의무)
- 제27조 (재사용 시스템에 관한 의무)

- ① 재사용 가능한 안전 및 위생 요건 충족
- ② 재사용 시스템 증빙 문서 확보
- ③ 세척·회수·재충전 가능한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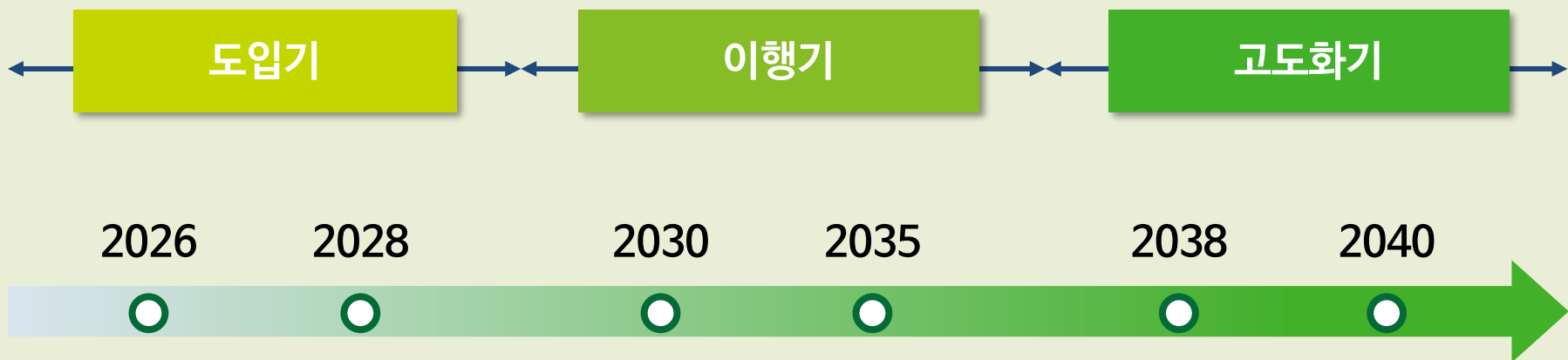
재활용

- 제5조
(패키징에 대한 물질 요구 사항(유해물질))
-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재활용성))
- 제7조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 제52조 (재활용 목표)
- 제45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 ① 환경 적합성을 고려한 패키징 전환
- ② 재활용성 성능 평가 도입률 목표 설정
- ③ 재활용 재료 사용 의무화
- ④ 재활용률 목표 설정 및 이행
- ⑤ EPR 차등 기여금 적용

PPWR 정책 목표는 화장품 패키징 산업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을 촉진

PPWR 시행 일정



PPWR 시행 일정

2026	2030	2038
•PPWR 일반 조항 본격 적용	•PCR*, DfR, 포장 최소화 의무 적용 •감축/재사용/재활용 목표 이행	•DfR 등급 상향
2028	2035	2040
•라벨링 의무화 •우려물질, EPR 정보 디지털 표시	•감축 목표 상향 •대규모 재활용 평가 도입	•PCR 의무기준 상향 적용 •감축/재사용 목표 상향

*PCR은 Post-Consumer Recycled로, 재활용된 원료를 나타내며, DfR은 Design for Recyclability로 포장재가 재활용 공정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포장재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함.

PPWR 주요 조항 분석

제5조

패키징에 대한 물질 요구 사항(유해물질)

Requirements for substances in packaging

주요 내용

- 우려물질과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 유해 영향 최소화
-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사용·재활용 저해 요소 사용 제한 채택 및 DfR 규정(제6조 4항)에 반영 예정
- 포장 구성 물질 내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농도 합계 100mg/kg 이하 제한

오염물질 함량 제한

Pb

납

+

Cd

카드뮴

+

Hg

수은

+

Cr

크롬¹⁾

≤

100_{mg/kg²⁾}

1) 크롬 중 인체에 유해한 '6가 크롬'에 해당, 국내 기준과도 유사

2) 100mg/kg은 100ppm 과 동일한 의미이며, mg/kg은 제품 및 패키징의 용량관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ppm은 주로 화학물질의 용량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

PPWR 주요 조항 분석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 (재활용성)
Recyclable packag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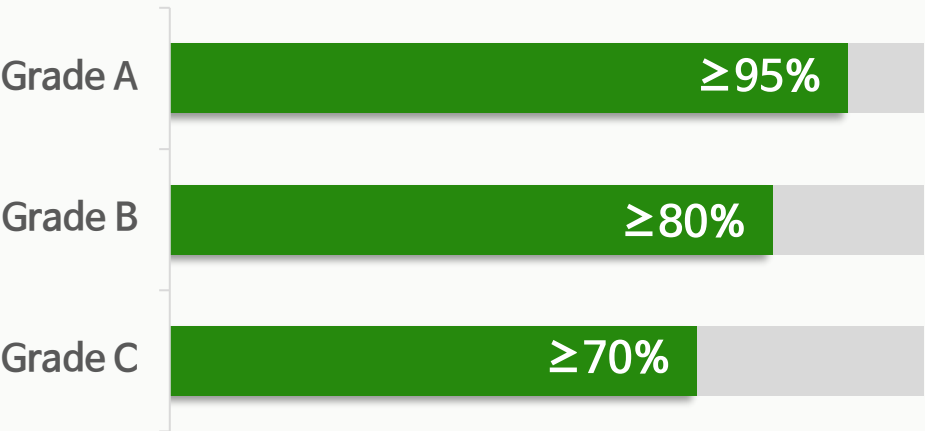
주요 내용

- 2028년 재활용률 기준·평가 방법 제정, 2030년부터 적용 (등급별 시장 진입 제한)
- 재활용성 요건: 설계 적합성, 수거·선별 가능성, 대규모 재활용 (Recycled at scale) 가능성 모두 충족

재활용성 성능 등급

패키징 유닛 당 재활용 가능한 비율 (%)에
대한 등급 (부속서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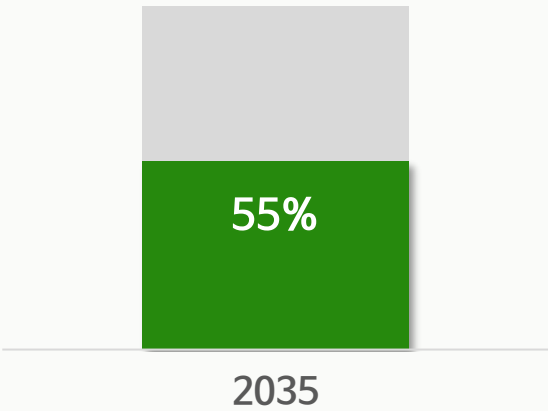
*단위당 재활용성(중량 기준)



대규모 재활용 평가

각 패키징 유형의 EU 역내 연간 재활용
실적 데이터를 검증하는 제도

*계산 규칙 기준 (DECISION (EU) 2019/665)



PPWR 주요 조항 분석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 (재활용성)
Recyclable packaging

CASE STUDY - L'OCCITANE EN PROVENCE



30ml Shea Butter Hand Cream 패키징 재발매

구분	기존 패키징 (2024년 이전 판매 버전)	재발매 패키징 (2024년 이후 판매 버전)
중량	3.71g	2.84g
소재	다중소재 (플라스틱+알루미늄)	단일소재 (PE)
구성	4중 (튜브, 헤드, 캡*, 뚜껑) *튜브를 막는 호일 마개)	2중 (튜브, 헤드)
재활용성	재활용 불가능 소재	재활용 가능



PPWR 주요 조항 분석

제7조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Minimum recycled content in plastic packag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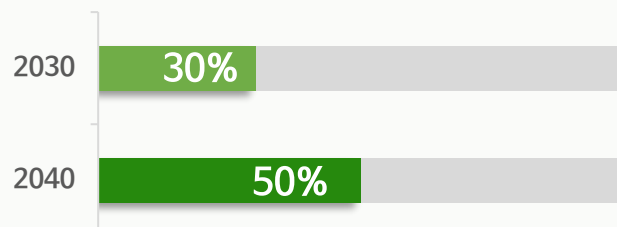
주요 내용

- 2026년 PCR 함량 산정 방법론 도입, 2030년부터 사용 의무 본격 시행 → EPR 차등화 기여금 기준 적용
- 2027년부터 PCR 원료 출처 및 지속가능성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 의무화
- 2026년 전후로 재활용 함량 산정·평가 방법론 및 고품질 재활용 기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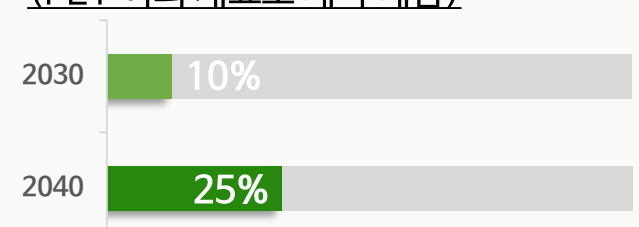
최소 재활용 함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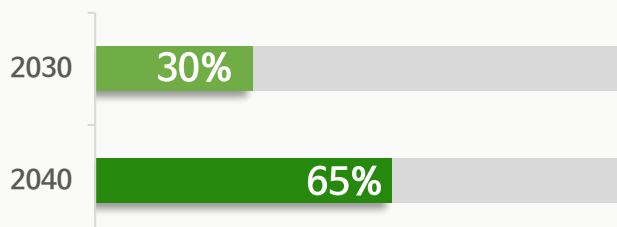
접촉 민감 패키징 (PET로 제작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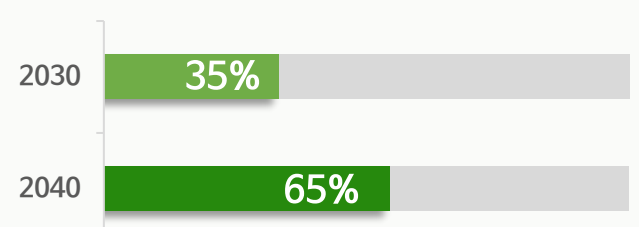
접촉 민감 패키징 (PET 이외 재료로 제작 제품)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 등)



기타 플라스틱 패키징



PPWR 주요 조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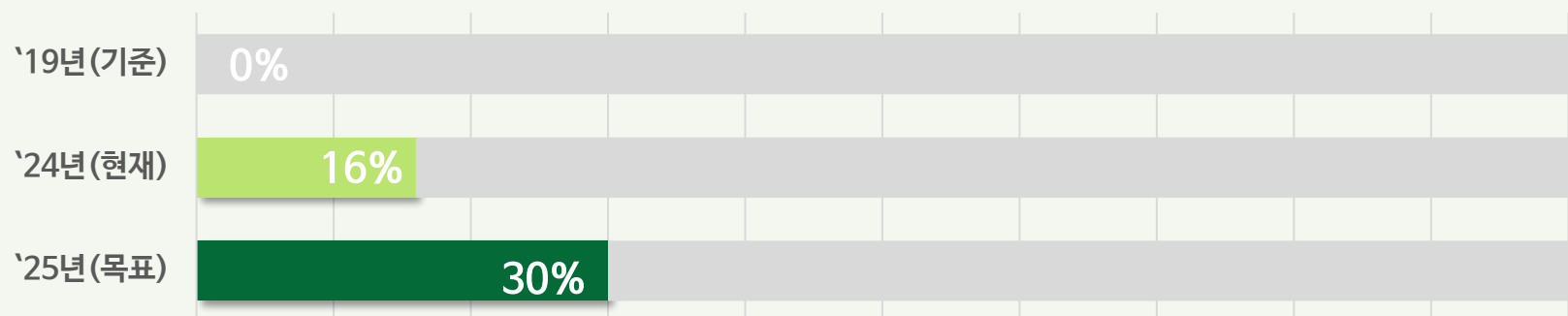
제7조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Minimum recycled content in plastic packaging

CASE STUDY - Beiersdorf

- Beiersdorf의 30% 재생원료 사용 목표 달성 현황



▲ NIVEA NATURALLY GOOD



▲ NIVEA 블루 크림 틴

PPWR 주요 조항 분석

제10조

포장 최소화

Packaging minimisation

주요 내용

- 2030년부터 무게, 부피, 층수 최소화 의무화, 기준 미충족 or 과대포장 판매 금지
- 예외: 2025년 2월 11일 이전 등록 디자인/상표권 포장, EU 보호 GI 제품, 품질인증 제품
- 2027년 최소화 요건 측정 및 평가 표준 마련, 기술문서 작성 의무
- 재사용 패키징은 제11조 요건 병행 적용

평가 원칙(부속서 IV)

구분	내용
제품 보호	• 제품의 유통부터 폐기까지 손상, 변질 없이 보호 • 물리적/화학적 손상, 오염, 품질 저하 등 모든 위험 방지
포장 제조 공정	• 패키징 설계와 제조·충전 공정의 호환 (두께, 형태, 내구성 등 공정상 요구 반영)
물류	• 유통, 운송, 보관, 핸들링 과정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적재 및 운송 가능 여부
기능성	• 제품의 용도, 판매 목적에 맞는 기능 보장
정보 제공	• 제품명, 사용법, 바코드, 유통기한 등의 필요한 정보 소비자에게 제공
위생·안전	• 사용자와 제품의 위생과 안전 보장(아동보호, 안전 개봉장치 등 포함)
법적 요구	• 해당 국가 및 EU의 관련 법령 준수
재활용성 ·재사용성	• PPWR의 재활용성, 재사용성, 재생원료 함량 등 준수

기술 문서 작성 시 필요 내용

1. 패키징의 최소 중량·부피 계산법&산정 결과

- 동일한 패키징 내 생산 배치 간 가능한 변동 사항 고려, 이 점 역시 문서화 필요

2. 더 이상 중량·부피를 줄일 수 없는 설계

- 사용한 설계 평가 방법 설명
- 불필요한 층(layer) 제거 등 모든 감량 기회 분석
- 더 이상 감량이 불가능한 설계적 이유 설명

3. 평가에 사용된 시험 결과 등의 근거 자료

- 위의 두 가지 작성 요건에 사용된 시험 결과, 연구, 시뮬레이션 등의 객관적 자료·데이터 첨부

PPWR 주요 조항 분석

제11조

재사용 가능 패키징

Reusable packaging

주요 내용

- 재사용 패키징 인정 받기 위해 내구성, 위생, 추적 가능성 등의 요건 충족 필요
- 2027년 2월 12일까지 이 규정을 보완하여 재사용 가능한 패키징의 순환 최소 횟수 등 설정

재사용 패키징 인정 요건

구분	내용
내구성	여러 번 재사용될 목적으로 설계, 제작 및 시장에 출시된 패키징
위생(소진/재충전)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며 비우거나 내용물을 꺼내고, 채울 수 있으며, 위생 요건 준수
추적가능성	안전, 올바른 사용, 추적성, 유통기한 등 제품 및 패키징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라벨 등으로 부착
최소 순환 수 달성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 최대한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패키징
소비자 사항	소비자 건강, 안전, 위생 관련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
재정비 가능성	부속서 VI B부에 따라 재정비가 가능하며, 본래의 기능을 계속 수행
작업 안전성	비우거나 내용물을 꺼내고,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
제6조 조건 충족	폐기 시 재활용 가능 패키징에 관한 제6조의 요건을 충족

PPWR 주요 조항 분석

제12조

패키징 라벨링

Labelling of packaging

주요 내용

- 2028년부터 모든 패키징에 재질, 분리배출 방법 등 조화된 라벨 부착 의무화
- 소형, 그룹 포장은 일반 또는 디지털 라벨 적용
- 2026년 상세 요건 및 디지털 표기 관련 위임법 제정 예정

패키징 유형별 적용 조항 구분

항목	일반 라벨	디지털 라벨
소비자 분리배출 안내	●	●
포장 구성요소별 배출 목적지 정보		○
오해·혼동 유발 라벨/마크/문구 금지	●	●
(해당 시)재사용 가능 여부	●	●
(해당 시)생분해성 관련 정보	●	
재사용 인프라 관련 정보 (수거지점, 현재 위치, 회전 횟수 등)		●*
(해당 시)재활용/PCR 함량 정보	●	●
(해당 시)유해물질 정보		●

항목	일반 라벨	디지털 라벨
EPR 제도 이행 여부		●
(해당 시) 보증금 반환제(DRS) 관련 정보	●	
기타 추가 정보(EU 회원국 언어 등)	●	

● - 의무 사항, ○ - 권장 사항(선택)
* 개방 루프 시스템은 비대상

PPWR 주요 조항 분석

제27조

재사용 시스템에 관한 의무

Obligation related to re-use systems

주요 내용

- 재사용 시스템: 회수, 세척, 재충전이 가능한 순환 체계(부속서 VI 참고)
- 운영 모델: 폐쇄/개방 루프, 전체 주기 추적 및 검증 가능
- 재사용 패키징: 안내 라벨, 디지털 정보(QR 등) 제공 및 연간 실적 데이터 보고 의무

재사용 시스템의 필수 요건(부속서 VI)

구분	내용
명확한 거버넌스 구조	역할, 소유권, 운영 방식 등 규정
공정한 참여 조건	모든 경제주체·소비자에게 평등한 접근 보장
최소 회전수 달성	유형별 최소 사용 횟수 기준충족 (2027년까지 도입 예정)
운영 규칙 명확화	포장 유형, 사용·수거·보관·충전·재정비 등 구체적 규칙 마련
패키징 회수율 제고	인센티브 제공 등
공정한 분배	비용·이익의 공정한 분배
책임이행	확장생산자책임(EPR) 이행
데이터 관리	회전수, 수거율, 판매량 등 실적 데이터 보고 체계 구축
포장 설계 표준화	합의된 사양 또는 표준에 따라 패키징 설계

PPWR 주요 조항 분석

제28조

리필에 관한 의무

Obligations related to refill

CASE STUDY - Henkel

- 리필 시스템을 통한 재사용성 증대

- ✓ 자체 브랜드 Love Nature를 독일 50개 리필 스테이션에서 제공(용기 100% 재활용 가능)
- ✓ 뷰티 케어 브랜드 Authentic Beauty Concept는 미용실 기반 2세대 리필바 프로그램 운영



▲ Love Nature 리필 스테이션



▲ Refill Bar model

- Authentic Beauty concept, 2세대 Refill Bar 규칙

- ✓ 용기 유형 : 90% PCR 재활용 플라스틱 병(최소 5회 재사용 가능)
- ✓ 위생기준 : 병에 포레스트 필름의 라벨 부착(목재 기반 필름 소재) 통해 정보 전달
- ✓ 사용 방식 : 전문가 상담 후 리필·라벨링 제공
- ✓ 특이사항 : 미용실 협업, 리필 인프라 예외

PPWR 주요 조항 분석

제29-31조 재사용 목표 및 달성도 계산 Re-use targets

운송 및 판매용 포장 재사용 목표

2030년

최소 **40%**

2040년

최소 **70%**

적용 포장



박스



팔레트



플라스틱
박스



드럼통



벌크용기



트레이



포장봉투



캐니스터

기타 포장 재사용 목표*

그룹 포장



박스류
(골판지 제외)

2030년

최소 **10%**

2040년

최소 **25%**

음료 포장



알코올성 및
비알코올성
음료

2030년

최소 **10%**

2040년

최소 **40%**

* 해당 재사용 목표 수치는 운송용 또는 판매용 포장에 적용되는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 경제 운영자가, 이 포장재를 재사용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재사용되도록 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

PPWR 주요 조항 분석

제35-39조

패키징 적합성

Conformity of packaging

주요 내용

- 패키징 제품의 PPWR 제5조-제12조 및 부속서 VII 요건을 준수를 적합성 선언서(DoC) 형태로 인증 필수
- EU 적합성 선언서에 제조업체의 공인 대리인 or 수입업체를 명시(공인 대리인이 없는 경우, 소송 대상)

관련 조항

이행의무 준수 조항

 제2조 범위
(Scope)

 제3조 정의
(Definitions)

 제4조 자유로운 이동
(Free movement)

정보 및 문서 요건 충족 조항

 제5조 패키징에 대한 물질 요구 사항
(Requirements for substances in packaging)

 제9조 생분해성 패키징
(Compostable packaging)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
(Recyclable packaging)

 제10조 포장 최소화
(Packaging minimization)

 제7조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Minimum recycled content in plastic packaging)

 제11조 재사용 가능한 패키징
(Reusable packaging)

 제8조 플라스틱 패키징의 생물 기반 플라스틱 원료
(Biobased feedstock in plastic packaging)

 제12 조 패키징 라벨링
(Labelling of packaging)

PPWR 주요 조항 분석

제35-39조

패키징 적합성 Conformity of packaging

적합성 평가 절차

단계	주요 내용
1. 내부생산관리	제조업체가 단독 책임 하에 제2~4조 이행 의무 및 5~12조 포장 규정 충족 선언
2. 기술 문서	패키징 요건 준수 증빙 서류 ● 포장 설명 및 용도 ● 설계, 제조 도면, 재료 등의 설명 및 해설 ● 목록(제36, 37조 언급된 사양, 측정 또는 계산 기술 사양, 표준이나 공통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채택한 솔루션에 대한 설명) ●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평가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질적 설명 ● 시험 보고서
3. 제조	제조 공정 및 모니터링으로 요구사항 준수 보장
4. 적합성 선언	적합성 선언서 작성 및 보관 (일회용 포장 5년, 재사용 가능 포장 10년), 사본은 당국에 제공
5. 공인 대리인	대리인이 제조업체 책임 하에 기술 문서 보관 가능(위임장 작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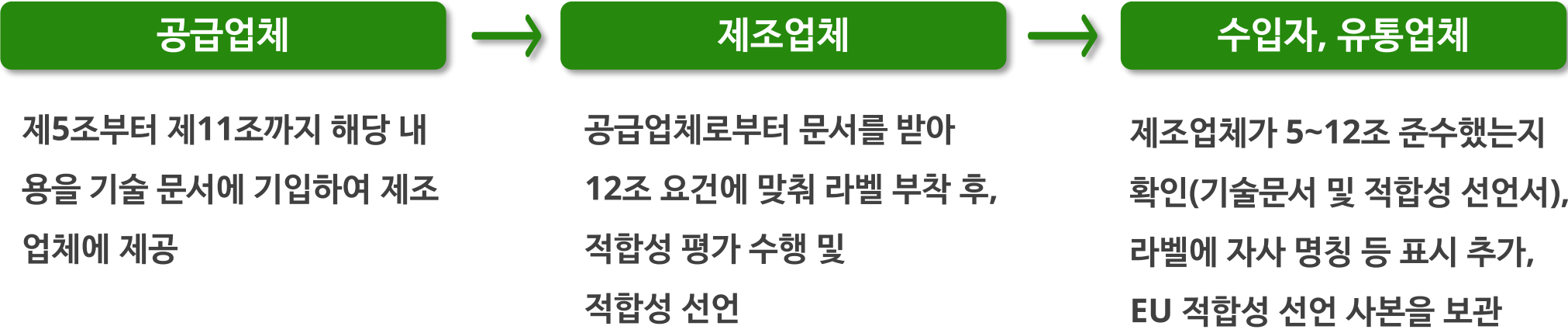
적합성 선언서(DoC)

EU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는 제조업체 혹은 유럽 대리인이 유통하려는 제품이 EU에서 제시한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에 대하여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주체별 역할

주체	주요 책임/역할	적합성 평가 및 선언, 기술문서	정보 표시 의무	당국 요청 시 자료 제출/협조 의무
공급업체 (제16조)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제5조부터 제11조 요건 관련 정보 및 기술문서 제조업체에 제공	-	-	-
제조업체 (제15조)	제5조부터 제12조 요건 충족한 패키징만 출시	작성 및 보관(주체)	식별정보 및 제조사 정보 표시, QR코드 등 디지털 매체 활용 가능	자료 전자/서면 제공(10일 내), 당국 협조
수입자 (제18조)		제조업체가 작성한 문서 사본 보관 및 제출(작성 권한 없음)	수입자 정보 표시(명칭, 주소 등), 문서/디지털 매체 활용 가능	
유통업체 (제19조)	시장 출시 전 요건 및 정보·라벨 확인, 생산자 등록 여부 확인, 상업적 정보 오남용 금지	-	정보 표시 확인 (명확성·가독성 등)	자료 확보 및 제출, 당국 협조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제20조)	창고보관·취급·포장·발송 등 과정에서 패키징의 요건 미충족 방지	-	-	-

주체별 프로세스



기술문서(TD)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는 적합성 선언서의 근거자료로써, 패키징의 설계·성능·환경영향 등을 상세하게 입증하는 문서입니다.

주요 문서 구성요소

기술문서 구성 내용(안)
● 성명 및 제조업자 혹은 유럽 대리인의 주소
● 제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안내
● 제품의 일련번호 등의 제품 식별 사항
● 제품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시설의 이름 및 주소
● 적합성 평가를 수행한 기관의 세부정보 (가능할 경우)
● 제품 적합성 평가와 연관된 기관 정보
● 준수된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선언서
● 라벨링 및 사용설명서
● 제품이 준수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
● 준수하고 있는 기술표준에 대한 식별
● 부품 구성 및 사용 목록
● 제품 테스트 결과

PPWR 대응방안

2026년 8월, EU의 적합성 선언서 보유 여부와 기술문서 작성에 대한 검증이 예정된 만큼, 기업은 패키징 역량을 강화하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역량 강화 및 대응방안 수립 방향성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와
세트형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근거 기반 증빙이 우선시되어야 함

기술문서는 시험성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 설계 방식에 대한 적합성을
증빙하는 역할로 사용되어야 함

유럽 내 관련 표준으로 통용되는
EN 13427, 13428을 기술문서 작성
및 평가 기반으로 채택할 것을 권장함

특히, EN 13428 표준의 핵심은
패키징 최적화 및 최소화이나,
유통 및 사용 단계의 자원 투입 또한 고려함



<https://kcia.or.kr>

2025 대한화장품협회 지속가능위원회



CHANEL



AMOREPACIFIC



L'ORÉAL
KORÉA



Aēsop.

ESTÉE
LAUDER
COMPANIES



COSMAX



Johnson&Johnson

HK Kolmar

